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62
----------	------

제출일자: 2019. 9. 17.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클럽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보조금 관리를 위한 회계책임자 지정·운영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마. 시행규칙(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제출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8. 14. ~ 9. 3.) 결과 : 접수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 권고

- 위반행위 시 제재방법 및 정도에 대한 관련 규정 마련 필요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

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하는 보조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스포츠클럽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 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

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

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근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에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 및 체육시설 관리 비용 지원

2. 비용추계 전제

-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공모요건
 - 대한체육회 보조금(3년 간 총9억)에 대한 구비 10% 매칭 지원
※대한체육회 보조금은 스포츠클럽 기금으로 별도 운영
-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응모계획(구청장 방침 제328호, 2019.4.16.) 및 지원 협약서(광진구-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4년차부터 연간 100,000천원 지원
 -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운영관리비용 지원(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국비						
	시비						
	구비	91,740	138,260	195,040	3,600	3,600	432,240
	소계(a)	91,740	138,260	195,040	3,600	3,600	432,240
세출	국비						
	시비						
	구비	150,000	150,000	250,000	220,000	220,000	990,000
	소계(b)	150,000	150,000	250,000	220,000	220,000	990,000
총비용(a-b)		-58,260	-11,740	-54,960	-216,400	-216,400	-557,76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국·시비(보조금)						
구비	지방세수입	58,260	11,740	54,960	216,400	216,400
	세외수입	91,740	138,260	195,040	3,600	3,600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50,000	150,000	250,000	220,000	220,000

5. 작성자 : 행정국 문화체육과 박민영(02-450-7587)